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64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553	전진숙의원	2024.9.3.	2024.11.14.
	3607	정태호의원	2024.9.4.	2024.11.14.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1.1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21.)는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 변화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시행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으로써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52조 등).

법률 제 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1항 중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를 "지구온난화"로 한다.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7조의2제2항"을 "제3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
	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u>다.</u>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 등) ① 질병관리	건강영향평가 등) ①
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u>지구온난화</u>
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	
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	2
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 1.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 1. 제37조의3제2항-----조사 실시
- 2. · 3. (생략)
- ③ ~ ⑤ (생 략)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생 략)

<신 설>

<신 설>

- 2. · 3.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 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 우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